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54

제출연월일 : 2016. 3.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인정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제3조)
나. 긴급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제4조)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긴급복지지원법 제2조6호(법률 제12934호, 2014.12.30. 공포,2015.7.1.시행)
2)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96호, 2015.6.1. 공포,2015.7.1.시행)
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2항(보건복지부령 제319호, 2015.6.2. 공포,2015.7.1.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5. 12. 28.~ 2016. 1. 17.
2) 규제심사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②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이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한다.

③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④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등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자활거부, 소득미신고 등)외의 사유로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여 급여결정전이거나 부적합 결정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⑦ 실직 폐업 등으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⑧「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⑨ 실직 폐업 등으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포함)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⑩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⑪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을 상환중인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⑫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동주민센터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⑭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작구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준용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